

이해상충방지규정

주식회사 옐로우독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이하 위 법 등을 총칭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에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인 출자자(이하 “출자자”),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기준은 회사 및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회사의 다른 내부규정이나 지침은 본 기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본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이 효력을 가지도록 조화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출자자 이익 우선 원칙)

1. 조합 및 출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
2. 모든 출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회사는 조합의 결성, 운영 및 청산 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관주의의무) 회사 및 임직원은 조합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기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원칙

제 5 조 (용어의 정의)

1. ‘이해상충’이라 함은 투자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자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 ① 조합재산을 이해관계 있는 특정기업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우
 - ② 조합재산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 ③ 대상기업에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 ④ 투자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 ⑤ 투자자금을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
 - ⑥ 업무집행조합원이 대상기업에 자기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 ⑦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 ⑧ 업무집행조합원이 별도의 조합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 ⑨ 업무집행조합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⑩ 업무집행조합원이 미투자자산을 임의로 운용한 경우
 - ⑪ 업무집행조합원이 특정자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 ⑫ 기타 조합의 전반적인 운용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해상충방지체제'라 함은 투자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준수 하여야 할 법규 및 조합규약의 내용을 특정·세분화하여 이를 회사의 조직, 인사 및 직무분장 상에 적절히 반영시킨 것을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선임된 자로서 현재 회사의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6 조 (이해상충방지기준의 제 개정)

- 1. 이 규정의 제정은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행한다.
- 2.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준법감시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 3.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의 변경에 따라 기준상의 실질적인 내용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 용어, 명칭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이 요하는 경우 이 기준의 개정으로 보지 않는다.
- 4.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7 조 (이해상충방지체제의 구축 및 운영)

1.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이해상충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① 법규 및 조항규약 준수측면 : 관계법규 및 조항규약에서 정한 내용 준수
 - ② 정보 측면 : 조합재산투자업무상의 정보와 그 외 업무상의 정보간의 구별
 - ③ 인사 측면 : 조합재산투자업무 관련 임직원과 그 외 임직원간의 구별
 - ④ 시설 측면 : 조합재산투자업무 관련시설과 그 외 업무시설간의 구별
2.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방지체제에 따른 모니터링, 제보에 따른 조사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시정요구 사항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3.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해상충방지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제 8 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1. 임직원은 회사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정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와 출자자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모니터링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경고할 수 있고, 회사는 적절히 관리 해야 한다.
4.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투자, 회수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금지행위) 회사와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공개·제공 : 투자현황 정보, 2개월 이내의 조합재산 구성내역 및 운용정보, 기타 투자업무상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또는 제공행위
2. 임직원 겸직 : 조합재산투자업무 관련 임직원과 그 외 임직원간의 겸직행위
3. 사무시설/전산 공유 : 사무시설이 벽,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또는 전항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되지 아니하는 행위
4. 비독립적 사무처리/회의기록 폐기 등 : 조합재산투자업무 담당부서와 다른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조합재산투자업무 담당자와 다른 임직원간에 해당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제 3 장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제 10 조 (내부통제조직)

1.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 내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효율적인 이해상충방지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3. 회사는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며, 준법감시인은 본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 등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 11 조 (내부통제관리) 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는 별도의 내부통제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준법감시인)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의 업무규정은 준법감시인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윤리의식)

1.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사적인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물, 호의 또는 부당이득을 받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수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외부강연, 언론매체 기고 및 취재 응대, 토론회 참가 등 대외활동은 사전에 홍보부서 및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에 특정한 임직원, 출자자,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또는 사업거래는 회피하거나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한 비밀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정보의 사용은 정보를 취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
6. 임직원은 거래처(납품업체 포함)와의 관계에 있어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적인 이익(향응, 접대 포함)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임직원 교육)

1.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계규정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 조 (관계규정 위반 시 처리)

1.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 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준법감시인은 출자자와 관련된 분쟁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출자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고양하고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단계별 준수사항

제 16 조 (출자자금 조성 단계)

1. 회사는 출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출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하여 출자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단계)

1. 회사는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조합 및 출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조합과 회사 또는 출자자들 사이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4. 회사는 투자대상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회사가 투자대상에 회사의 고유계정,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다른 조합을 통하여 별도의 투자를 하였거나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출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회사가 투자대상과 개별적인 계약이나 약정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출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회사가 사후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출자자들에게 고지하고 출자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제 18 조 (투자대상 관리 및 운영단계)

1. 회사는 기투자된 투자대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투자대상과 조합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투자대상과 별도의 사적 계약이나 거래, 별도의 조합을 통한 투자 등을 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출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19 조 (출자자금의 회수 및 분배단계)

1. 회사는 투자대상으로부터 출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 및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출자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조합의 투자대상으로부터 회사의 고유계정,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다른 조합을 통하여 기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출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출자자금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다른 조합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어야 하며, 조합 및 출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